

【붙임】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8. 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의 명칭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복지지원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진료비 감면기준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및 관계부처의 명칭 수정

-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안 제1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 제3조, 제6조),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함(안 제4조)

나.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 징수일을 “당월”에서 “당일”로 변경함
(안 제10조)

다. 제11조의 제목 “(검사수수료 감면)”을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으로 변경하여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별표 3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을 별표 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으로 수정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여 이를 “제1호 검사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제2호 진료비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별첨

나. 개정 조례안 : 별첨

다.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라. 관계부서승인 : 해당 없음

마. 입법 예고 : 2008. 4. 18 ~ 5. 8 실시, 의견 없음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를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4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행정지도부 가격”을 “행정지도가격”으로 한다.

제6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8조중 “별표 1”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제10조중 “당월”을 “당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검사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으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검사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수수료
<p>1.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한다.</p> <p>가.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p> <p>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p> <p>다.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p> <p>라.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관정의 수질검사</p> <p>마.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p> <p style="margin-left: 20px;">- 세균학적인 검사(제9조 별표1의 제10호 사목, 아목)</p> <p style="margin-left: 20px;">- 이화학적인 검사(제9조 별표1의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p> <p>2. 보건지소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p> <p>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p> <p>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p> <p>다. 위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자</p>	<p>면 제</p> <p>면 제</p> <p>면 제</p> <p>면 제</p> <p>4,000</p> <p>2,000</p> <p>면 제</p> <p>면 제</p> <p>면 제</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6조</u>의 규정에 의거 -----.</p> <p>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u>의료보험법에 의하여</u>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p> <p>제4조(약가) ----- -----<u>보건사회부 행정지도부가격</u>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u>의료보험법</u> 등 -----.</p> <p>제8조(보증금 등)보건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u>별표1</u>”의 입원서약서를 -----.</p> <p>제9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각 종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u>별표 2</u>”에 의거 징수한다.</p> <p>제10조(징수)①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u>당월</u>에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1조(<u>검사수수료의 감면</u>)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u>별표3</u>에 의거 <u>검사수수료</u>를 감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u>제14조의</u> 규정에 의거 -----.</p> <p>제3조(진료수가) ----- 「<u>국민건강보험법</u>」에 의하여 -----.</p> <p>제4조(약가) ----- ----- <u>보건복지가족부 행정지도가격</u>을 -----.</p> <p>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u>국민건강보험법</u>」 등 -----.</p> <p>제8조(보증금 등)----- ----- “<u>별지 제1호 서식</u>”의 입원서약서를 -----.</p> <p>제9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 “<u>별표 1</u>”에 -----.</p> <p>제10조(징수)①----- <u>당일</u>에 -----.</p> <p>제11조(<u>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u>) 보건의료원장은 ----- ----- <u>별표2</u>에 의거 <u>수수료 및 진료비</u>를 감면한다.</p>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 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의료비 감면 및 무료건강검진